

1. 개정이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으로 사법경찰관리의 ‘신분비공개수사’, ‘신분위장수사’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검찰사무 세부 절차 및 서식을 정비하여 해당 법률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분위장수사, 긴급신분위장수사에 대한 허가신청서 및 관련 기록 접수 규정 정비(안 제6조)

- 현행 영장신청서 및 기록 접수 규정에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른 신분 위장수사 제도 명기

나. 신분위장수사 허가 청구 및 기간 연장, 긴급신분위장수사에 대한 사후허가 청구 관련 규정 및 서식 신설(안 제97조의3 및 별지 제157호의 9서식부터 별지 제157호의14서식까지)

다. 신설업무 관련, 검찰사건사무규칙에서 대검에 위임하고 있는 내부 서식에 대한 위임 규정 추가(안 제31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경찰청 등과 합의되었음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2) 입법예고(2021. . . ~ .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예정

검찰사건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검찰사건사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법경찰관”을 “사법경찰관(제6호의 경우 사법경찰리의 신청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6조제6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3 및 제25조의4에 따른 신분위장수사, 긴급신분위장수사에 대한 허가서
제2편 제2장 제7절에 제97조의3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7조의3(신분위장수사허가 또는 긴급신분위장수사에 대한 사후허가 청구 등) 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으로 각 호의 신분위장수사허가, 긴급신분위장수사 사후허가 및 그 기간연장을 청구한다.

1. 청소년성보호법 제25조의3 제3항에 따라 신분위장수사허가를 청구하는 경우: 별지 제157호의9서식의 신분위장수사 청구서
2. 청소년성보호법 제25조의4 제2항에 따라 긴급신분위장수사에 대한 사후허가를 청구하는 경우: 별지 제157호의10서식의 긴급신분위장수사 사후허가 청구서
3. 청소년성보호법 제25조의3 제8항에 따라 신분위장수사의 기간연장

을 청구하는 경우: 별지 제157호의11서식의 신분위장수사 기간연장
청구서

② 검사는 사법경찰관리의 제1항에 따른 신분위장수사허가 또는 그
기간의 연장, 긴급신분위장수사 사후허가 신청을 검토하여 신분위장
수사 또는 그 기간의 연장, 긴급신분위장수사를 할 만한 상당한 이유
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신분위장수사허가 또는 그 기간의 연장, 긴급신
분위장수사에 대한 사후허가의 신청을 기각한다.

1. 사법경찰관리가 신분위장수사허가를 신청한 경우: 별지 제157호의1
2서식의 신분위장수사허가 신청 기각서
2. 사법경찰관리가 긴급신분위장수사에 대한 사후허가를 신청한 경우:
별지 제157호의13서식의 긴급신분위장수사 사후허가 신청 기각서
3. 사법경찰관리가 신분위장수사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 별지 제1
57호의14서식의 신분위장수사 기간연장 신청 기각서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분위장
수사허가를 청구하거나 신분위장수사허가의 신청을 기각한 경우에는
신분위장수사허가청구부에 해당사항을 기록하고, 긴급신분위장수사에
대한 사후허가를 청구하거나 사후허가의 신청을 기각한 경우에는 긴
급신분위장수사 사후허가청구부에 해당사항을 기록하고, 신분위장수
사 기간의 연장을 청구하거나 신청을 기각한 경우에는 신분위장수사
기간 연장처리부에 해당사항을 기록한다.

④ 신분위장수사허가 또는 그 기간의 연장, 긴급신분위장수사에 대한 사후허가 청구의 기각, 집행 등에 관하여는 신분위장수사 또는 긴급신분위장수사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5조제6항 및 제57조부터 제59조까지를 준용한다.

제319조제1항에 제143호부터 제14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3. 신분위장수사허가청구부

144. 긴급신분위장수사 사후허가청구부

145. 신분위장수사기간 연장처리부

별지 제157호의9서식 부터 별지 제157호의14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 검 찰 청

제 0000-0000 호

0000. 00. 00.

수 신 : ○○○법원장

발 신 : ○○○검찰청

제 목 : 신분위장수사허가청구

검 사

인

다음 피의자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신분위장수사허가 신청이 있는바, 그 사유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동 허가서의 발부를 청구합니다.

피 의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신 분 위 장 수 사 의 종 류 · 목 적 · 방 법	별지 신분위장수사허가 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신 분 위 장 수 사 의 대 상 과 범 위	별지 신분위장수사허가 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신 분 위 장 수 사 의 기 간 및 장 소	1. 기 간 : 0000. 00. 00. 부터 0000. 00. 00. 까지 2. 장 소 :	
협 의 사 실 의 요 지 및 청 구 이 유	별지 신분위장수사허가 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신 분 위 장 수 사 할 자 의 직 급 · 성 명		
재청구의 취지 및 이유	별지 신분위장수사허가 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발부하지 않는 취지 및 이유	판 사 인	

210mm×297mm[백상지(80g/㎡)]

○ ○ ○ 검 찰 청

제 0000-0000 호

0000. 00. 00.

수 신 : ○○○법원장

발 신 : ○○○검찰청

제 목 : 신분위장수사 허가청구(사후)

검 사

인

다음 피의자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긴급 신분위장수사를 실시하고 그에 대한 신분위장수사 허가청구신청이 있는바, 그 사유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허가서의 발부를 청구합니다.

피 의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긴급 신분위장수사의 사유와 내용		신분위장수사의 사유와 내용	
혐의사실의 요지 및 신분위장수사를 필요로 하는 사유와 허가를 받을 수 없었던 긴급한 사유	별지 신분위장수사허가 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혐의사실의 요지 및 신분위장수사를 계속 필요로 하는 사유	별지 신분위장수사허가 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긴급신분위장수사의 종류·목적·방법	별지 신분위장수사허가 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신분위장수사의 종류·목적·방법	별지 신분위장수사허가 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긴급신분위장수사의 대상과 범위	별지 신분위장수사허가 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신분위장수사의 대상과 범위	별지 신분위장수사허가 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긴급신분위장수사의 일시와 장소		신분위장수사의 기간	
긴급신분위장수사한 자의 직급·성명		신분위장수사의 장소	
재청구의 취지 및 이유	별지 신분위장수사허가 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발부하지 않는 취지 및 이유	판 사		인

210mm×297mm[백상지(80g/㎡)]

○ ○ ○ **검찰청**

제 0000-0000 호

0000. 00. 00.

수 신 : ○○○법원장

발 신 : ○○○검찰청

제 목 : 신분위장수사 기간연장 청구

검 사 

다음 피의자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신분위장수사기간연장신청
이 있는바, 그 사유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신분위장수사기간연장을 청구합니다.

피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사건번호	
허가서번호	
신분위장수사 허가기간	0000. 00. 00. 부터 0000. 00. 00. 까지
연장할기간	0000. 00. 00. 부터 0000. 00. 00. 까지
기간연장이 필요한 이유 및 소명자료	별지 신분위장수사기간연장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발부하지 않는 취지 및 이유	판사 

210mm×297mm[백상지(80g/㎡)]

○ ○ ○ 검 찰 청

제 0000-0000 호

0000. 00. 00.

수 신 : ○○○경찰서장

제 목 : 신분위장수사허가 신청 기각

다음 피의자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신분위장수사허가 신청이 있는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신분위장수사허가 신청 기각합니다.

피 의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신분위장수사의 종 류 · 목 적 · 방 법	별지 신분위장수사허가 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신분위장수사의 대 상 과 범 위	별지 신분위장수사허가 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신분위장수사의 기 간 및 장 소	1. 기 간 : 0000. 00. 00. 부터 0000. 00. 00. 까지 2. 장 소 :			
혐의사실의 요지 및 신 청 이 유	별지 신분위장수사허가 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신분위장수사할 자 의 직 급 · 성 명				
재 신 청 의 취 지 및 이 유	별지 신분위장수사허가 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기 각 하 는 취 지 및 이 유				
○ ○ ○ 검 찰 청				
검 사		인		

○ ○ ○ 검 찰 청

제 0000-0000 호

0000. 00. 00.

수 신 : ○○○경찰서장

제 목 : 신분위장수사허가 신청(사후) 기각

다음 피의자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긴급 신분위장수사를 실시하고 그에 대한 신분 위장수사 허가청구신청이 있는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신분위장수사허가 신청을 기각합니다.

피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긴급 신분위장수사의 사유와 내용		신분위장수사의 사유와 내용	
혐의사실의 요지 및 신분위장수사를 필요로 하는 사유와 허가를 받을 수 없었던 긴급한 사유	별지 신분위장수사허가 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혐의사실의 요지 및 신분위장수사를 계속 필요로 하는 사유	별지 신분위장수사허가 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긴급신분위장수사의 종류·목적·방법	별지 신분위장수사허가 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신분위장수사의 종류·목적·방법	별지 신분위장수사허가 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긴급신분위장수사의 대상과 범위	별지 신분위장수사허가 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신분위장수사의 대상과 범위	별지 신분위장수사허가 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긴급신분위장수사의 일시와 집행장소		신분위장수사의 기간	
긴급신분위장수사한 자의 직급·성명		신분위장수사의 장소	
재신청의 취지 및 이유	별지 신분위장수사허가 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기각하는 취지 및 이유			
○ ○ ○ 검 찰 청			
검 사 인			

210mm×297mm[백상지(80g/㎡)]

○ ○ ○ 검 찰 청

제 0000-0000 호

0000. 00. 00.

수 신 : ○○○경찰서장

제 목 : 신분위장수사 기간연장 신청 기각

다음 피의자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신분위장수사 기간연장 청구신청이 있는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신분위장수사 기간연장 청구신청을 기각합니다.

피 의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사 건 번 호	
허 가 서 번 호	
신분위장수사허가기간	0000. 00. 00. 부터 0000. 00. 00. 까지
연 장 할 기 간	0000. 00. 00. 부터 0000. 00. 00. 까지
기간연장이 필요한 이유 및 소명자료	별지 신분위장수사기간연장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기각하는 취지 및 이유	
○ ○ ○ 검 찰 청 검 사 	

210mm×297mm[백상지(80g/㎡)]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영장신청서 및 관련 기록의 접수) 사건사무담당직원은 <u>사법경찰관</u> 이 다음 각 호의 영장 등의 청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서별로 구분하여 영장 등의 신청서와 관련 기록(이하 “영장신청서등”이라 한다)을 함께 접수한다.	제6조(영장신청서 및 관련 기록의 접수) ----- <u>사법경찰관(제6호의 경우 사법경찰리의 신청을 포함한다)</u> ----- ----- ----- -----.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u><신설></u>	6. <u>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3 및 제25조의4에 따른 신분위장수사, 긴급신분위장수사에 대한 허가</u> <u>서</u>
6. (생략)	7. (현행 제6호와 같음)
<u><신설></u>	<u>제97조의3(신분위장수사허가 또는 긴급신분위장수사에 대한 사후허가 청구 등) ①</u> 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으로 각 호의 신분위장수사허가, 긴급신분위장수사 사후허가 및 그 기간연장을 청구한다.
	1. <u>청소년성보호법 제25조의3 제3항에 따라 신분위장수사허</u>

가를 청구하는 경우 : 별지 제 157호의9서식의 신분위장수사 청구서

2. 청소년성보호법 제25조의4 제2항에 따라 긴급신분위장수사에 대한 사후허가를 청구하는 경우 : 별지 제157호의10서식의 긴급신분위장수사 사후허가 청구서

3. 청소년성보호법 제25조의3 제8항에 따라 신분위장수사의 기간연장을 청구하는 경우 : 별지 제157호의11서식의 신분위장수사 기간연장 청구서

② 검사는 사법경찰관리의 제1항에 따른 신분위장수사허가 또는 그 기간의 연장, 긴급신분위장수사 사후허가 신청을 검토하여 신분위장수사 또는 그 기간의 연장, 긴급신분위장수사를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신분위장수사허가 또는 그 기간의 연장, 긴급신분위장수사에 대한 사후허

가의 신청을 기각한다.

1. 사법경찰관리가 신분위장수사허가를 신청한 경우 : 별지 제157호의12서식의 신분위장수사허가 신청 기각서

2. 사법경찰관리가 긴급신분위장수사에 대한 사후허가를 신청한 경우 : 별지 제157호의13서식의 긴급신분위장수사 사후허가 신청 기각서

3. 사법경찰관리가 신분위장수사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 : 별지 제157호의14서식의 신분위장수사 기간연장 신청 기각서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분위장수사허가를 청구하거나 신분위장수사허가의 신청을 기각한 경우에는 신분위장수사허가청구부에 해당사항을 기록하고, 긴급신분위장수사에 대한 사후허가를 청구하거나 사후허가의 신청을 기각한 경우에는 긴급신분위장수사 사후허가청구부에 해당사항을 기록하고,

제319조(별표와 서식 등) ① 이 규칙에 규정된 다음 각 호의 서식은 대검찰청예규로 정한다. 1. ~ 142. (생략) <u><신설></u> <u><신설></u> <u><신설></u> ②·③ (생략)	<u>신분위장수사 기간의 연장을 청구하거나 신청을 기각한 경우에는 신분위장수사기간 연장처리부에 해당사항을 기록한다.</u> <u>④ 신분위장수사허가 또는 그 기간의 연장, 긴급신분위장수사에 대한 사후허가 청구의 기각, 집행 등에 관하여는 신분위장수사 또는 긴급신분위장수사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5조제6항 및 제57조부터 제59조까지를 준용한다.</u> 제319조(별표와 서식 등) ① ----- -----. 1. ~ 142. (현행과 같음) <u>143. 신분위장수사허가청구부</u> <u>144. 긴급신분위장수사 사후허가청구부</u> <u>145. 신분위장수사기간 연장처리부</u> ②·③ (현행과 같음)
--	---